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현장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4제3항제1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함.

나.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가 보다 종합적으로 수집·관리 또는 제공되도록 함.

다. 산업체 및 현장 경험 인정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안 제36조제3항)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요건 정비(안 제39조의3)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학과 특성 및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3항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

7.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

제36조제3항 단서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어야”를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을 “졸업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으로

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입학 또는 등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이”를 “학칙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대학이 개설하는 다기능기술자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생 모집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 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소 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및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u> <u>·도·특별자치도</u>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2. ~ 5. (생 략) ④ ~ ⑨ (생 략) 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25조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말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u> <u>·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u> <u>도</u> -----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청년고용촉진 특별법</u> 」 제 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 <u>로그램</u> 이수 정보

5.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
·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
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에서 정한다. 다만, 학칙으로 정
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연한의 4
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① 법 제40조의2
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
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어야 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
소득 지급 정보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
·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수 있으며, 법 제41조제2항제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연
한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① -----

--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

1. <u>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2. <u>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입학 또는 등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3. <u>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4. <u>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u>	<u>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u> ----. 1. ----- ----- <u>졸업한</u> ----- ----- ----- ----- 2. ----- ----- ----- ----- <u>사람</u> <u><삭 제></u> <u><삭 제></u>
---	---

<u>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u>고용노동부장관이</u> 정한다.	② ----- ----- ----- <u>학칙으로</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